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CN949 Series  
 동의어 HP Scitex XL300 Classic 녹색색 잉크

나. 제품의 권고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잉크젯 인쇄

회사 ID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6 한국 HP 빌딩, 150-724 (HP Korea House)  
 .  
 .  
 전화번호 (02) 2199-0114

HP Inc. health effects line  
 (미국 내 수신자 부담 전화) 1-800-457-4209  
 (직접) 1-760-710-0048  
 HP Inc. Customer Care Line  
 (미국 내 수신자 부담 전화) 1-800-474-6836  
 (직접) 1-208-323-2551  
 전자 메일 hpcustomer.inquiries@hp.com

발행일자 2015년 5월 4일  
 개정일 2016년 8월 19일  
 개정판 번호 03

2. 유해성\_위험성

가. 유해성\_위험성 분류  
 물리적 위험성 분류되지 않음.  
 건강 유해성 분류되지 않음.  
 환경 유해성 분류되지 않음.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o 그림문자 없음.  
 o 신호어 없음.  
 o 유해\_위험 문구 없음.

o 예방조치 문구  
 예방 없음  
 대응 없음  
 저장 없음  
 폐기 없음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CAS 번호	식별번호	함유량(%)
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 Acetate		112-07-2	KE-04135	<80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아세트산		108-65-6	KE-23315	<30
비닐 염화물-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		영업기밀	영업기밀	<5
Pigment Blue		영업기밀	영업기밀	<2.5

4. 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접촉시, 즉시 대량의 물로 눈을 씻은 후 15분동안 물을 지속적으로 눈에 흘려내리십시오.  
 자극 증상이 계속되면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접촉시, 즉시 오염된 옷과 신발을 벗으면서 피부를 다량의 물로 적어도 15분간 씻어내십시오. 자극 증상이 계속되면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오염된 옷과 신발은 벗어서 격리시키십시오. 옷과 신발은 완전히 세탁한 후에 다시 사용하거나 폐기하십시오.
- 다.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십시오. 증상이 계속되면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라. 먹었을 때      삼킨 경우 이 용기 또는 경고표지를 읽어보고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증상에 따라 치료할 것.

## 5. 폭발\_화재시 대처방법

- 가.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적절한 소화제      CO2, 물, 건조 화학약품분말 또는 포말  
     부적절한 소화제      불길에 번질 위험이 있으므로 강력한 물줄기를 사용하지 말 것.
-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예: 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자료없음.
-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예방조치      소방수는 자가호흡기구를 포함한 완전한 보호의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자료없음.

##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충분히 환기하십시오.
-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자료없음.
-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유출물을 담고 비연소성 흡수재(모래, 흙, 규조토, 질석 등)로 흡수하여 관련 법령(13항 참조)에 따른 폐기용 용기로 옮기십시오.

## 7. 취급 및 저장방법

- 가. 안전취급요령      피부, 눈, 및 의복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제품에서 발생하는 기포나 습기를 흡입하지 마십시오.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십시오.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할 것.
- 나. 안전한 저장 방법 (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여 건조하고 서늘하며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열, 불꽃 또는 화염으로부터 격리시키십시오.

## 8. 누출방지/개인보호구

###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구성성분

종류

값

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 Acetate  
 (CAS 112-07-2)

TWA

131 mg/m3

20 ppm

ACGIH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  
 구성성분

종류

값

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 Acetate  
 (CAS 112-07-2)

TWA

20 ppm

생물학적 노출기준

구성성분에 대해 알려진 생물학적 노출기준은 없음.

노출 지침

제정되지 않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사용하십시오.

특히 좁은 구역일 경우, 적절한 환기가 되도록 하십시오. 이 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에는 눈을 씻을 수 있는 장치와 안전 샤워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권고되는 노출 한계 내의 공기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해당 구역의 환기 또는 국부적인 배기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다. 개인 보호구

o 호흡기 보호

자료없음.

o 눈 보호

눈 접촉을 피하십시오.  
 방호안경, 케미칼 고글(경우).

o 손 보호

자료없음.

o 신체 보호

피부와 눈への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위생대책  
권장되는 모니터링 절차  
부가노출데이터

식품 및 음료로부터 멀리할 것. 휴식시간 전과 작업시간 후에는 손을 씻으십시오.  
제정되지 않음.

---

## 9. 물리화학적 특성

### 가. 외관 (물리적 상태, 색 등)

물리적 상태      자료없음.  
색                    청록색

나. 냄새              자료없음.

다. 냄새 역치        자료없음.

라. pH                자료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자료없음.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163 \_C (325.4 \_F) 건적의

사. 인화점            66.0 \_C (150.8 \_F) Setaflash Closed Tester

아. 증발 속도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하한                    자료없음.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                    자료없음.

폭발 한계 - 하한 (%)    자료없음.

폭발 한계 - 상한 (%)    자료없음.

카. 증기압            결정되지 않음.

### 타. 용해도

용해도(물)            자료없음.

파. 증기밀도        자료없음.

하. 비중              자료없음.

거. n-옥탄올/물 분배계수    자료없음.

너. 자연발화 온도    자료없음.

더. 분해 온도        자료없음.

러. 점도              자료없음.

머. 분자량            자료없음.

### 기타 정보

VOC (무게 %)        < 901 g/l

---

## 10. 안정성 및 반응성

###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화학적 안정성        정상 상태에서는 안정적임

유해 반응의 가능성    발생하지 않을 것임.

나. 피해야 할 조건 (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자료없음.

다. 피해야 할 물질    강산화제 강산 및 강염기. 산화제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알려지지 않음

---

## 11. 독성에 관한 정보

###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o 호흡기              자료없음.

o 경구                자료없음.

o 눈                    자료없음.

o 피부                자료없음.

### 나. 건강 유해성 정보

o 급성 독성 (노출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    사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면 분류되지 않음.

o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사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면 분류되지 않음.

- o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사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면 분류되지 않음.
- o 호흡기 과민성                    사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면 분류되지 않음.
- o 피부 과민성                    사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면 분류되지 않음.
- o 발암성                    사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면 분류되지 않음.

**IARC 단행본. 발암성에 관한 총평**

Vinyl chloride-vinyl acetate copolymer (CAS 3 인체 발암성으로 분류되지 않음.  
영업기밀)

- o 생식세포 변이원성                    사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면 분류되지 않음.
- o 생식 독성                    사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면 분류되지 않음.
- o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사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면 분류되지 않음.
- o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사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면 분류되지 않음.
- o 흡인 유해성                    사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면 분류되지 않음.

구성성분	종	시험 결과
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 Acetate (CAS 112-07-2)		
급성		
경구		
LD50	쥐	2400 mg/kg
경피		
LD50	토끼	1500 mg/kg
기타		
LD50	생쥐	754 mg/kg

추가 정보                    이 특정 제재과 관련하여 유독성에 관한 완전한 자료는 없습니다.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 수생환경 유해성, 급성 유해성                    자료없음.
- 수생환경 유해성, 만성 유해성                    자료없음.

-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자료없음.
- 다. 생물 농축성                    자료없음.
- 라. 토양 이동성                    자료없음.
- 마.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일반 사무실 폐기물과 함께 폐기하지 마십시오.  
이 물질이 하수구/수로로 유입되지 않게 할 것.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적법한 허가를 보유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수거 및 폐기해야 합니다.

나. 폐기시 주의사항 (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자료없음.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DOT

유엔 번호	NA1993
UN 적정 선적명	Combustible liquid n.o.s. (2-methoxy-1-methylethyl acetate) -Not regulated in quantities less than 119 gallons
운송 위험 등급	
위해 등급	가연성
부수적 위험	-
포장 그룹	III
사용자에 대한 특별 주의사항	자료없음.

DOT supplemental information                    DOT 분류는 미국 및 푸에르토리코 내의 운송에만 적용됩니다.

**IATA**

위험물로 규제되지 않음.

**국제해상위험물 (IMDG)**

위험물로 규제되지 않음.

**ADR**

위험물로 규제되지 않음.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

해당 없음.

**허가대상 유해물질**

해당 없음.

**관리대상 유해물질**

ETHYLENE GLYCOL MONOBUTYL ACETATE (CAS 112-07-2)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2-BUTOXYETHANOLACETATE (CAS 112-07-2)

**작업환경 측정대상물질**

ETHYLENE GLYCOL MONO BUTYL ACETATE (CAS 112-07-2)

**노출기준설정물질**

ETHYLENEGLYCOL MONOBUTYL ETHERACETATE (CAS 112-07-2)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사고대비물질**

해당 없음.

**취급금지물질**

해당 없음.

**관찰물질**

해당 없음.

**취급제한물질**

해당 없음.

**유독물**

해당 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폐유기용제중 할로겐족에 해당되는 물질**

해당 없음.

**유해물질**

해당 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유해물질**

해당 없음.

**특정대기유해물질**

해당 없음.

**법적 규제현황**

본 HP 제품에 사용된 모든 화학 물질은 화학 물질 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국가에서 신고를 마쳤거나 면제받았습니다: 미국(TSCA), EU(EINECS/ELINCS), 스위스, 캐나다(DSL/NDSL),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필리핀, 대한민국, 뉴질랜드, 중국.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자료없음.

**나. 최초 작성일자**

2015년 5월 4일

**개정일**

2016년 8월 19일

**다. 개정 횟수 및 최종**

2016년 8월 19일 (03 개정)

**개정일자**

**라. 기타**

자료없음.

**책임의 한계**

이 안전 보건 자료 문서는 HP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HP는 이 문서를 준비할 때에 자료가 가장 최근 자료로 알려 정확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묘사된 대로 제품의 특정 특성이나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적합성을 보증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서는 위 자료의 섹션 1에서 명시된 관할권의 요구 사항으로 준비된 것으로, 다른 국가의 규제 사항에 부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조사 정보**

HP Inc.  
1501 Page Mill Road  
Palo Alto, CA 94304-1112 US  
(직접) +972 (9) 892-4628

**약어 설명**

<b>ACGIH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b>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회(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b>CAS</b>	Chemical Abstracts Service
<b>CERCLA</b>	종합 환경문제 대책, 보상, 책임에 관한 법률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b>CFR</b>	연방 규정집
<b>COC</b>	클리브랜드 오픈컵
<b>DOT</b>	교통부
<b>EPCRA</b>	긴급상황대처계획 및 지역주민의 알 권리에 관한 법률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일명 SARA)
<b>IARC</b>	국제암연구학회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b>NIOSH</b>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b>NTP</b>	국제 독물학 프로그램
<b>OSHA</b>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b>PEL</b>	허용노출기준
<b>RCRA</b>	자원보존과재활용에관한법률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b>REC</b>	권장됨
<b>REL</b>	권장 노출 허용 기준
<b>SARA</b>	수퍼펀드개정 및 재권한법 (1986) (Superfund Amendments and Reauthorization Act of 1986)
<b>STEL - 단기노출기준</b>	단시간 노출기준(Short Term Exposure Limit, STEL)
<b>TCLP</b>	독성 특성 용출 시험
<b>TLV</b>	기준 한계치
<b>TSCA</b>	유해화학물질관리법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b>휘발성유기화합물 (VOC)</b>	휘발성 유기 화합물